

부산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5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045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568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3248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론 종결 2024. 5. 8.

판결 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324813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5. 13. B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9. 4.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공탁된 1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급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을 『채권최고액 434,4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 "매각대금에서"를 『매각대금에 매각대금 이자 63,235원을 합한 실제 배당할 금액 630,063,235원에서』로 고쳐 쓴다.

2.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5. 13.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2021. 6. 2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에 비추어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 당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1. 5. 13.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태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719,000,000
2	구미시 H 토지 중 B 지분	105,000,000
3	(차량번호 1 생략) SM6 2017년식	178,000
4	(차량번호 2 생략) BMW GT	17,820,000
합계	841,998,000	

○ 소극재산

1	J카드	2021. 4. 14. 대출	2,000,000
2	2017. 4. 28. 대출	7,151,000	
3	G회사	2020. 8. 19. 대출	272,000,000
4	2020. 8. 19. 대출	90,000,000	
5	K회사	2018. 6. 19. 대출	17,355,000
6	L카드	2018. 5. 4. 대출	187,000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국민연금 체납	5,322,040
8	M	대여금	100,000,000
9	부산진구청	체납	155,030
10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903,883
11	(계좌번호 2 생략)	90,325,479	
12	(계좌번호 3 생략)	26,098,728	
13	(계좌번호 4 생략)	5,036,958	
14	부산인용보증재단		30,000,000
15	E은행	가압류 원인채권	27,757,989
16	N은행		4,275,813
17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	122,240,122
18	피고	대여금	150,000,000
합계	952,809,042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B에게 150,000,000원 상당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B와 인적 관계가 없어 B의 신용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의 채무초과 상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21. 4.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이후에 앞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조금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피고는 B가 그 과정에서 피고의 대여금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당시 B의 경제적 상황, 거래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2019년도에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21. 5. 13.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행위가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반면,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15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22카단52847 채권처분금지처분으로 인하여 공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금덕희

판사이상균

판사고종영

별지